

## | 지면보수교육 |

## 뇌심혈관질환의 산재보상 사례

김 태 수 / 근로복지공단 차장

### 1. 작업장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서비스산업의 확대 등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육체노동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반면 반복작업, 장시간 불규칙 및 반생리적 근로, 정신노동의 증가, 경쟁적 인사관리제도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 종사자에게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이 가중되고 있다.

피로(疲勞:fatigue)란 연속 또는 반복되는 정신적 육체적 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심신기능의 저하를 말하나, 피로가 발생하는 기전이나 생리적 양태에 대하여 객관적 학문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정도나 양을 측정하기도 어려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다. 과로(過勞:overwork)란 피로가 누적해서 생기는 생리적 상태를 말하나, 의학적으로 과로란 충분한 휴식으로 반드시 회복되며 만약 피로감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과로의 범위를 벗어나는 질병의 전신증상의 하나로 본다.

스트레스는 생물의 항상성(homeostasis)을

방해하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유해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방어반응을 촉진한다. 산업현장에 적용된 직업성 스트레스란 업무요구량과 개인의 수행능력과의 사이에서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정도의 불균형을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만병의 근원이라 하여 특정질병에 걸렸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한 듯하나, 과로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과로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즉 기존질병의 진행 또는 악화를 촉진하거나 질병발생 원인의 일부로서 관여했을 뿐인 것이다.

인체의 질환과 업무관련성을 지적하는 의학적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과로나 스트레스 또한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요인의 하나로 거론되기에 이르렀고 노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질환은 가장 개연성이 높은 질병으로 입증됨으로서 산재보험제도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

## 2. 업무와 관련된 뇌혈관 심장질환

산재보험법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뇌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 등의 뇌혈관질환과, 심근경색·협심증·해리성대동맥류 등 심장질환에 인정하고 있고, 법원의 판례나 행정해석에 의해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하고 있는 뇌혈관질환은 “혈관성 원인에 의한 24시간이상 지속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갑자기 발생한 국소 또는 전반적 뇌기능의 장해를 보이는 임상적 징후”를 말하며, 우리들이 일상에서 는 흔히 뇌졸중(stroke, brain attack), 중풍(中風)이나 풍(風)으로 불리우고,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동맥의 병변으로 생기는 질병으로서 뇌출혈, 뇌경색(뇌혈전, 뇌전색), 지주막하 출혈, 고혈압성뇌증, 일과성 뇌허혈발작 등을 모두 합쳐 일컫는다.

심장질환 중에서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혈류장애에 의해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이 부족한 관상동맥의 허혈상태가 원인이므로 허혈성 심질환(虛血性 心疾患)이라 하며, WHO에서는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① 일차성 심정지, ②협심증, ③심근경색증, ④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심부전, ⑤부정맥으로 분류하며, 우리의 산재보험제도에서는 심근

경색증과 협심증을 정하고 있고, 그 외 해리성대동맥류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있다.

전통적인 직업성 질병은 주로 업무와 관련된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은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겹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개인의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에 이환되어 있다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그 질환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기존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 3. 뇌혈관·심장질환의 업무상 촉발요인

뇌혈관·심장질환의 원인 또는 기초질환이 고혈압, 당뇨, 뇌동맥류 등은 어느 날 갑자기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 또는 선천성 질병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질환이다.

대부분의 뇌혈관 및 심장질환이 임상적으로 명백한 증상을 보이기까지는 발병의 전제 조건인 기초질환과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촉발요인이 더해짐으로서 증상이 발현된다. 무증상 상태의 질병이 갑자기 증상을 발현하게 하는 요인을 촉발요인(觸發要因, precipitating factor)이라 한다. 업무상 질병여

표 1. 뇌혈관·심장질환의 발증 기전

기초·기존질환	위험요인	촉발요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당뇨, 동맥류	유전적 소인 음주, 흡연 고지방·고염·고당식 운동부족	급격한 육체적 부담 감정의 급격한 부담 기후의 급격한 변화 배변, 입욕, 과음, 과식	⇒ 급격한 혈압의 상승에 의한 뇌혈관 및 심장질환의 발증 ⇒ 사망
기초질환+위험인자+촉발요인 = 뇌혈관·심장질환의 발증			

부의 판단에 있어 촉발요인(자극요인)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나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혈압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뇌구조물의 전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모두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하며, 만성적 과로, 흥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혈관·심장질환의 촉발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이나 건강한 사람에서는 그러한 원인만으로 발증되지 않으며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은 특별한 촉발요인이 없더라도 발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한다.

사업주와의 근로관계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 등이 뇌혈관·심장질환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무증상(無症狀)을 증상발현(症狀發現)으로 바꾸어주는 촉발요인 중 업무와 의미있는 요인이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한 기전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인체가 통상적으로 받는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증”으로 보아 업무외 재해로 판정된다.

#### 4. 뇌혈관·심장질환의 업무상 인정기준

##### (1) 돌발상황

『돌발상황』이라 함은 업무수행 중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경우로서 업무와 관련된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사건에 대해 극도로 놀라거나 흥분하는 등의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간의 생체는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경악 등의 정신적 부하를 일으키는 돌발적 또는 예측 곤란한 상황을 당하면 급격한 혈압변동과 혈관수축을 일으키므로, ①택시운전사의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를 당할 뻔한 경우, ②업무와 관련하여 상사와 동료와의 말다툼 또는 고객과의 말다툼, ③갑작스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 등이 있은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초질환 등 혈관병변이 그 자연적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고 현저히 악화될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

##### (2)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 즉 일상 업무에 비해 일정기간 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돌발상황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의 경험인 반면, 이 경우는 한시적으로 특정의 시간(3일 이내)동안 환경의 변화로서, 여름철 혹서기의 용광로 작업과 같은 고온작업을 한 경우, 납품기일에 맞추기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업무량을 늘려 작업한 경우, 상급자가 자리를 비워 한시적으로 상급자의 업무를 겸직한 경우 등 통상의 소정업무내용에 비해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 (3) 육체적·정신적 만성과로

업무상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로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일상 업무 그 자체가 과로 및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로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야간작업이나 교대작업, 그리고 운전작업 등이다. 따라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통상의 업무내용 등과 비교해서 특히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하를 일으킨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의미한다.

#### (4) 업무수행 중 뇌출혈 발병

업무수행 중에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의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뇌혈관질환 중 출혈성 뇌혈관질환인 뇌실질내출혈이나 지주막하 출혈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한 경우에는 사고성 재해에 준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 5. 뇌혈관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판정 사례

**사례 1. 수출제품 포장·운반공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동료직원과 사소한 말다툼 후 발생한 “고혈압성 뇌출혈”**

비록 재해당일 동료근로자와 사소한 말다툼 중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해당시 사업장 내에 출근하여 작업준비 중 발병하여 업

무수행성이 인정될 뿐만아니라, 발병일 이전 5일간 계속적으로 1일 12시간씩 근무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피재자의 발병원인이 동료근로자와의 사소한 언쟁이라기 보다는 발병일 이전에 누적된 업무상 과로로 봄이 타당하다. (2003 심사결정 제2284호)

#### 사례 2. 은행원이 자택에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이 발병한 경우

청구인 주장 : 여신관리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구조조정과정에서 감원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급격히 악화시켜 발생되었다.

판정 :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이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감원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나머지 뇌혈관질환이 발병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2두3720 2002.8.21.)

#### 사례 3.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경비원이 근무중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비록 격일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근무일이라도 야간에는 수시로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쉴 수 있고, 수년간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오는 동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1두3907, 2001.7.27.)

**사례 4.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동료직원의 장지를 다녀오다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사망한 동료직원이 사장의 친척인 점, 당시 회사 간부 대부분이 밤샘문상을 한 점, 발인이 회사 근무일임에도 상당수 직원들이 장지까지 쫓아가 하관을 하였는데 결근 내지 지각처리 하지 않은 점, 회사 전무가 문상과 하관참여를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장례행사에 참여는 개인적인 친분이기 보다는 근로제 공의무의 일환으로 회사가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장례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평소 허약한 체질의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두5528, 2002.9.9.)

**사례 5. 택시운전기사로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취침 중 발생한 “뇌경색”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피해자의 근무형태는 2일 일하고 1일 쉬는 형태이며, 피해자의 하루 근무시간은 대부분 20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뇌경색은 나이, 담배, 고혈압,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의 질환에서 흔히 발생하나, 피해자의 경우 1일 반갑 정도의 흡연 외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뇌경색유발 위험인자의 병력은 없으며, 발병 4일전부터 2일간(22시간~23시간) 거의 휴식이 없이 연속 근무한 후 하루 쉬고 다시 23시간 30분을 근무하고 귀가 직후 발병하여 과로가 뚜렷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3심사결정-1306)

